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 ① 이 약관은 종합자산관리계좌와 관련하여 고객과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간의 투자 일임계약 (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약관은 투자일임재산의 매매거래 시 적용되는 투자일임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일임”이란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고객 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좌”라 함은 투자일임과 관련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한다.
3.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투자일임재산”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운용 등으로 형성된 재산(현금포함)을 말한다.
5. “관계인수인”이란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서 정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계열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제3조(투자자산운용사의 선임 및 교체)

-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선임하여 투자일임을 하도록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회사의 다른 투자자산운용사에게 투자일임 재산의 운용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제재내역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투자자산운용사는 고객이 별도의 서면을 통하여 지정한 운용조건에 따라 고객을 위한 투자일임을 수행한다.
- ⑥ 투자자산운용사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고객의 수임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고객 이름으로 투자일임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2. 그 밖의 투자일임재산의 효율적인 운용

- ⑦ 고객은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⑧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 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⑨ 회사는 제8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⑩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고객은 제8항의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투자자산운용사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위탁)

회사는 투자일임 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 ① 고객이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에서 정한 서비스별 최저가입금액 이상의 재산을 예탁하여야 한다.
- ② 계약기간은 고객과 회사가 별도로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고객과 회사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③ 회사는 계약기간 만기일 30일전에 고객에게 만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기간 만기일까지 계약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계약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건 및 기간으로 자동 연장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에 의하여 만기일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계약기간 만기일까지 계약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 및 기간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한다.

제6조(투자대상 등)

투자대상 금융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계좌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다만, 인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편입할 수 있다.
- 2.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편입할 수 있다.
- 3. 그 밖의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매입이 금지된 금융투자상품

제7조(투자일임방법 등)

-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이하“투자목적 등”이라 한다)을 투자일임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투자목적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운용조건을 고객이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2. 연 1회 이상 고객의 투자목적 등 및 운용조건의 변경여부를 서면 등으로 파악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할 것.
 3.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받은 경우, 이를 투자일임 업무에 반영할 것
- ② 제1항의 운용조건이란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에 대하여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 등을 말한다.
 1. 투자대상 투자일임재산의 종류 및 한도
 2. 회사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여부
 3.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투자여부
 4. 관리종목에 대한 투자여부
 5. 청약대상 투자자문재산의 종류 및 한도
 6. 그 밖의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게 재산을 운용하는 방식
- ③ 고객이 투자목적 등 및 운용조건 등의 수정 또는 투자상담 등을 원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사전에 정한 방법(전화, 대면, 전자우편 등 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을 통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상담할 수 있다.
- ④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자문회사와의 자문계약체결 및 해지)

- ① 회사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정한 자문가이던스(Guidance)범위 내에서 포트폴리오자문을 받아 일임형종합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투자자문회사로부터 포트폴리오 자문을 받은 후 당사의 투자판단을 거친 후 최종 운용한다.
- ③ 투자자문사 선정과 사후 관리 시에 계량화 된 평가항목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기존 자문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기존 자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투자자문회사의 부도, 투자자문회사의 대주주 또는 주요 운용역의 변동 등 경영상 문제 발생시
 2. 투자자문회사가 시세조정참여 등 관련 법규 및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투자자문회사의 자문결과가 회사가 정한 수익률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투자자문회사가 회사가 정한 자문가이던스(Guidance)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5. 회사가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자문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고객의 이익에 상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⑤ 회사가 기존 자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해지 전에 투자권유 또는 계약체결 업무를 행하는 자를 통하여 고객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 컴퓨터 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기존 자문 계약 해지될 예정임을 알릴 수 있다. 회사는 고객에게 기존 자문 계약이 해지될 예정임을 사전에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알릴 수 있다.
- ⑥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의 다른 자문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회사가 정한 투자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로의 변경을 권유할 수 있다.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기존에 가입한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기본 및 성과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징수한 후 다른 종합자산관리계좌로 변경할 수 있다.
- ⑦ 고객이 다른 종합자산관리계좌로 변경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청산해지 또는 일반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기존 가입한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기본 및 성과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징수한다.

제9조(고객자산의 인출 등)

- ① 고객이 예탁자산의 출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1>에서 정한 서비스별 최저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 출금이 가능하고, 처분하려는 자산의 결제일을 고려하여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 내 출금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출금신청금액 내에서 즉시 인출할 수 있다.
- ② 고객은 고객 계좌 내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회사에 위탁할 수 없다.
- ③ 출금(해지) 신청 시점과 실제 출금(해지)시점의 차이로 수익률과 실제 출금액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중도입출금(고) 거래 시 증권의 가치가 변하지 않더라도 투자원금이 조정되어 수익률의 변동이 생길 수 있다.
- ④ 랩서비스별 출금가능여부는 상품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손익의 귀속)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투자일임은 시장상황의 예측, 목표수익률의 달성, 투자성과 및 원금보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일임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1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① 고객의 지시에 의한 손해
- ②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 불능이나 지연으로 인한 손해

제12조(청약의 철회)

-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일임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

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3조(위법 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지)

- ①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의 예탁자산 인출로 종합자산관리계좌 내 예탁자산 평가액이 <별지1>에서 정한 최저예탁자산(서비스별 최소가입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다만, 제15조에 따른 수수료, 제세공과금 그 밖의 필요경비의 인출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
 2. 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속적인 투자일임이 불가능한 사고등록 및 압류, 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적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대하여,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일임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거래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의 서면상의 지시로 인한 고객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산하는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일임 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모든 고객 재산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위탁자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단, 계좌 내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 해지의 유형별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산해지의 경우 신청일(T)부터 보유자산의 처분(결제) 완료 시 출금이 가능하며, 청산해지 신청 후 결제가 완료된 경우 한꺼번에 위탁으로 결제대금 전환 후 서비스가 해지처리 된다.
 2. 일반해지의 경우 신청일(T)일 즉시 서비스가 해지처리 되며, 랩 내 자산 그대로 위탁으로 전환된다.
 3. 미결제 일반해지의 경우 매수 및 매도 결제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목이 위탁으로 한꺼번에 전환되며, 결제되지 않은 부분은 결제완료 시점에 위탁으로 한꺼번에 전환 및 서비스 해지처리가 된다.
 4. 청산이 만기가 있는 증권 및 집합투자증권의 중도해지수수료 면제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5. 투자일임재산의 계좌별 상황(일부 보유자산의 시장 처분 불가, 한국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 등 거래 시장의 폐쇄 또는 휴장 등)에 따라 일임계좌에서 자산을 출금하거나 일임계좌를 청산 및 일반해지 하는 행위가 일정기간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 ① 투자일임에 따른 수수료는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상품설명서와 계약권유문서 내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운용성과측정 및 그 밖의 계좌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며 회사는 제1항의 수수료 이외에 매매거래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단, 성과수수료는 <별지2>에서 정한 바에 계산방법과 계산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임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이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외국)집합투자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세금과 관련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주식 등 또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 중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주식 등 또는 파생상품 등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 부과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단, 동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별지> 및 설명서와 계약권유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객이 정한 투자목적 등 및 운용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고 재산이 운용된 경우
 3. 고객이 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4. 계약이 합의 해지되는 경우
- ⑥ 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지 시 <별지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우편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경과 및 손익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5.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한 투자일임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경우 고객이 요구할 때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일임 보고서를 비치하는 것

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 (약관변경의 통지)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또는 넥스트레이드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의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기준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약관 본문이 변경되지 않고 <별지1>에 신규 랩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기존 랩서비스를 삭제, 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정 약관은 개정 전 랩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제18조(고객의 변경사항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일임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때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9조(재산의 소유권)

-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임재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가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받을 수 있다.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2. 공개매수의 응모
 3. 유상증자의 청약
 4.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6.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7.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관련법상 금지된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21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협회, 한국거래소 또는 넥스트레이드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2에 따라 방문 판매 및 유선 · 무선 · 화상통신 ·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정 2004년 01월 02일
 개정 2004년 10월 26일
 개정 2004년 11월 01일
 개정 2006년 07월 07일
 개정 2006년 08월 07일
 개정 2008년 04월 21일
 개정 2008년 08월 01일
 개정 2009년 02월 04일
 개정 2009년 08월 10일
 개정 2009년 08월 24일
 개정 2009년 10월 19일
 개정 2011년 03월 31일
 개정 2011년 05월 25일
 개정 2011년 06월 04일
 개정 2011년 06월 13일
 개정 2012년 04월 30일.
 개정 2012년 06월 04일
 개정 2012년 07월 02일

개정 2013년 04월 29일
 개정 2013년 12월 02일
 개정 2014년 02월 03일
 개정 2014년 03월 17일
 개정 2014년 04월 14일
 개정 2014년 05월 07일
 개정 2014년 06월 16일
 개정 2014년 06월 30일
 개정 2014년 07월 14일
 개정 2014년 08월 01일
 개정 2014년 08월 13일
 개정 2014년 09월 01일
 개정 2014년 09월 25일
 개정 2014년 10월 20일
 개정 2014년 11월 18일
 개정 2014년 12월 10일
 개정 2015년 01월 22일
 개정 2015년 01월 22일

개정 2015년 02월 04일	개정 2018년 05월 11일
개정 2015년 02월 24일	개정 2018년 06월 11일
개정 2015년 03월 02일	개정 2018년 10월 26일
개정 2015년 03월 12일	개정 2018년 12월 17일
개정 2015년 05월 07일	개정 2019년 02월 25일
개정 2015년 05월 29일	개정 2019년 04월 08일
개정 2015년 07월 06일	개정 2019년 04월 29일
개정 2015년 07월 13일	개정 2019년 05월 27일
개정 2015년 07월 27일	개정 2019년 08월 07일
개정 2015년 08월 03일	개정 2019년 08월 19일
개정 2015년 09월 01일	개정 2019년 09월 16일
개정 2015년 10월 12일	개정 2019년 11월 05일
개정 2015년 11월 17일	개정 2019년 11월 18일
개정 2016년 01월 04일	개정 2019년 11월 21일
개정 2016년 01월 11일	개정 2020년 01월 02일
개정 2016년 01월 25일	개정 2020년 01월 30일
개정 2016년 04월 01일	개정 2020년 02월 24일
개정 2016년 04월 18일	개정 2020년 05월 28일
개정 2016년 05월 19일	개정 2020년 06월 30일
개정 2016년 05월 30일	개정 2020년 08월 12일
개정 2016년 06월 27일	개정 2020년 11월 10일
개정 2016년 07월 20일	개정 2021년 01월 15일
개정 2016년 08월 26일	개정 2021년 01월 22일
개정 2016년 09월 01일	개정 2021년 01월 26일
개정 2016년 12월 05일	개정 2021년 03월 02일
개정 2016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24일
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21년 03월 29일
개정 2017년 03월 29일	개정 2021년 04월 19일
개정 2017년 04월 10일	개정 2021년 05월 03일
개정 2017년 04월 24일	개정 2021년 05월 28일
개정 2017년 04월 28일	개정 2021년 06월 15일
개정 2017년 06월 22일	개정 2021년 08월 03일
개정 2017년 07월 24일	개정 2021년 08월 17일
개정 2017년 08월 01일	개정 2021년 10월 31일
개정 2017년 09월 06일	개정 2021년 12월 30일
개정 2017년 09월 22일	개정 2022년 01월 05일
개정 2017년 10월 23일	개정 2022년 01월 27일
개정 2017년 11월 27일	개정 2022년 02월 04일
개정 2018년 01월 02일	개정 2022년 02월 10일
개정 2018년 01월 22일	개정 2022년 02월 11일
개정 2018년 03월 19일	개정 2022년 02월 21일
개정 2018년 03월 30일	개정 2022년 03월 14일
개정 2018년 05월 04일	개정 2022년 05월 23일

개정 2022년 09월 17일	개정 2025년 09월 05일
개정 2022년 10월 01일	개정 2025년 09월 22일
개정 2023년 01월 05일	개정 2025년 09월 25일
개정 2023년 02월 13일	개정 2025년 10월 17일
개정 2023년 03월 02일	개정 2025년 11월 10일
개정 2023년 03월 14일	개정 2026년 01월 09일
개정 2023년 03월 30일	개정 2026년 01월 15일
개정 2023년 05월 31일	개정 2026년 02월 09일
개정 2023년 07월 11일	개정 2026년 03월 16일
개정 2023년 08월 18일	개정 2026년 03월 30일
개정 2023년 09월 04일	개정 2026년 04월 20일
개정 2023년 11월 30일	개정 2026년 04월 27일
개정 2023년 12월 18일	개정 2026년 05월 04일
개정 2024년 01월 15일	개정 2026년 05월 18일
개정 2024년 03월 04일	개정 2026년 06월 01일
개정 2024년 03월 11일	개정 2026년 06월 15일
개정 2024년 03월 18일	개정 2026년 06월 22일
개정 2024년 04월 19일	개정 2026년 06월 29일
개정 2024년 06월 10일	개정 2026년 07월 13일
개정 2024년 06월 13일	개정 2026년 08월 10일
개정 2024년 06월 18일	개정 2026년 09월 11일
개정 2024년 08월 19일	개정 2026년 09월 28일
개정 2024년 08월 26일	개정 2026년 10월 02일
개정 2024년 09월 30일	
개정 2024년 11월 11일	
개정 2025년 05월 19일	
개정 2025년 06월 23일	
개정 2025년 07월 23일	
개정 2025년 08월 19일	

<별지1>

서비스별 최소가입금액, 수수료 및 입출금고 기준

1. 서비스별 수수료 및 최소가입금액

유형	서비스명	최소가입금액 (원)	수수료징수일	수수료(예탁자산 일 평균잔액 기준)
주식형	신한명품 적립형 ETF랩 (판매종료)	2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1.0%
	신한명품 적립식 한중일 ETF랩 (판매종료)	월 2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1.0%
	신한명품 분할매수형랩	1,000만	선취+후취	- 선취(최초 1회): 납입금액 대비 1.0% - 연간 후취: 전체 자산 대비 0.6% (1,4,7,10월 첫 영업일 가입 후 1년 경과 시 수수료 받지 않음)
			선취(최초1회)	납입금액 대비 1.5%
	신한명품 임의식 주식형랩 (판매종료)	3,000만	연간 후취(체차 적용) (1,4,7,10월 첫 영업일)	3년 이하: 전체 자산 대비 1.5% 3년 초과: 전체 자산 대비 1.3% 5년 초과: 전체 자산 대비 1.0%
	신한명품 적립식 주식형랩 (판매종료)	월 200만	연간 후취(체차 적용) (1,4,7,10월 첫 영업일)	1~24회차: 전체 자산 대비 2.0% 24회차 초과: 전체 자산 대비 1.5% 36회차 초과: 전체 자산 대비 1.3% 60회차 초과: 전체 자산 대비 1.0%
	신한명품 적립식 1억 만들기 랩 (판매종료)	월 1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2.4%
	신한 탐픽스랩	3,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선취: 납입금액 대비 1.5% + 후취: 전체 자산 대비 1.0%
			연간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1.8%
		50억 이상 ~100억 미 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1.5%~1.8% 구간 내 고객과 협의
		100억 이상 ~200억 미 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1.0%~1.5% 구간 내 고객과 협의
		200억 이상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0.5%~1.0% 구간 내 고객과 협의
채권형	신한명품 맞춤형 채권형랩	협 의	협 의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한 수수료를 적용 (전체 자산 x 협의 수수료율)
혼합형	신한 프리미어 미래설계랩	3,0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자산배분형_국내: 전체 자산 대비 연 1.8% 자산배분형_해외: 전체 자산 대비 연 1.8% 액티브테마형: 전체 자산 대비 연 1.8%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3,000만	연간 선취(매년)	납입금액 대비 0.8%

	(선취형) (판매종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0.8%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미국소상공인대출) (판매종료)	1억 200만	선취 (최초 가입시 1회)	선취(최초1회): 납입금액 대비 1.3%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부동산) 3호 (판매종료)	1억 1,000만	선취 (최초 가입시 1회)	선취(최초1회): 납입금액 대비 2.0%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미국소상공인대출) 2호 (판매종료)	2억	선취 (최초 가입시 1회)	선취(최초1회): 납입금액 대비 1.3%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미국소상공인대출) 3호 (판매종료)	2억	선취 (최초 가입시 1회)	선취(최초1회): 납입금액 대비 1.3%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미국소상공인대출) 4호 (판매종료)	2억	선취 (최초 가입시 1회)	선취(최초1회): 납입금액 대비 1.3%
	신한명품 오페라 법인 EMA 맞춤형 (판매종료)	100억	협 의	최소 연 0.2%
	신한명품 미래설계랩 (임의식) A형 (판매종료)	3,000만	선취 (최초 가입시 1회)	납입금액 대비 1.0%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1년 이하: 전체 자산 대비 연 0.6% 1년 초과: 전체 자산 대비 연 1.6%
	신한명품 미래설계랩 (임의식) C형 (판매종료)	3,000만	선취 (최초 가입시 1회)	납입금액 대비 2.0%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1년 초과: 전체 자산 대비 연 1.0%
	신한 프리미어 SOL메이트 랩(인컴형)	3,000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연 1.2%
국내 자문형	신한명품 토러스 자문형랩	3,000만	연간 후취 (체차 적용) (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연간 후취, 금액 구간별 체차 적용) 50억 이하: 연 1.9% 50억 초과~100억 이하: 연 1.5% 100억 초과: 연 1.0%
	신한명품 토러스 중소형주 자문형랩 (판매종료)			
	신한명품 케이원 자문형랩	1억원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2.0%
	신한명품 토러스 자문형랩 (선취형)	3,000만	선취 (최초 가입시 1회)	납입금액 대비 1.0%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1.6%
	신한명품 VIP 자문형랩	5,000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2.0%
	신한 VIP 리커버리랩 (판매종료)	2,000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1.0%
	신한 함께 성과형랩(VIP)	5,000만	성과수수료 (성과 수수료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성과수수료 (고객과 합의)
	신한 토러스 자문형랩 (목표전환형)	5,000만	선취 (최초 가입시 1회)	납입금액 대비 1.0%
			성과수수료 (성과 수수료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성과수수료 (고객과 합의)

	씨앗 자문형랩 (목표전환형)	5,000만	선취 (최초 가입시 1회)	납입금액 대비 1.0%
			성과수수료 (성과 수수료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성과수수료 (고객과 합의)
	황소 자문형랩 (목표전환형)	5,000만	선취 (최초 가입시 1회)	납입금액 대비 1.0%
			성과수수료 (성과 수수료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성과수수료 (고객과 합의)
	체슬리 자문형랩 (목표전환형)	5,000만	선취 (최초 가입시 1회)	납입금액 대비 1.0%
			성과수수료 (성과 수수료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성과수수료 (고객과 합의)
	씨스퀘어 자문형랩 (목표전환형)	3,000만	선취 (최초 가입시 1회)	납입금액 대비 1.0%
			성과수수료 (성과 수수료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성과수수료 (고객과 합의)
	삼성엑티브 자문형랩 (목표전환형)	3,000만	선취 (최초 가입시 1회)	납입금액 대비 1.0%
			성과수수료 (성과 수수료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성과수수료 (고객과 합의)
	퀵드올섹터 자문형랩 (목표전환형)	3,000만	선취 (최초 가입시 1회)	납입금액 대비 1.0%
			성과수수료 (성과 수수료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성과수수료 (고객과 합의)
	아트만 자문형랩 (목표전환형)	3,000만	선취 (최초 가입시 1회)	납입금액 대비 1.0%
			성과수수료 (성과 수수료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성과수수료 (고객과 합의)
	씨스퀘어 자문형랩	3,000만	선취 (최초 가입시 1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선취형 : 선취 1.0%(납입금액 대비)+ 후취 연 1.2%(전체 자산 대비) 후취형 : 후취 연 1.9%(전체 자산 대비)
	체슬리 자문형랩	3,000만	선취 (최초 가입시 1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성과수수료 (성과 수수료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선취형 : 선취 1.0%(납입금액 대비)+ 후취 연 1.2%(전체 자산 대비) 성과형 : 후취 연 1.5%(전체 자산 대비)+ 성과수수료 (고객과 합의)
	신한 유니스토리 자문형랩	3,000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1.6%
			성과수수료 (성과 수수료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성과수수료(고객과 합의)
	신한 유니스토리 자문형랩 (선취형)	3,000만	선취 (최초 1회 징수)	전체 자산 대비 1.0%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납입자산 대비 1.2%
	VIP K-Leaders 자문형랩	5,000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2.0%
	디에스 자문형랩	5,000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성과수수료 (성과 수수료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전체 자산 대비 1.6% + 성과수수료 (고객과 합의)
	디에스 자문형랩 (목표전환형)	3,000만	선취 (최초 가입시 1회)	납입금액 대비 1.0%
			성과수수료 (성과 수수료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성과수수료 (고객과 합의)

삼성 책임투자ESG 자문형랩	5,000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20%
쿼드 헬스케어 자문형랩	5,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선취형: 선취 1.0%(납입금액 대비)+ 후취 연 1.6%(전체 자산 대비) 후취형: 후취 연 1.9%(전체 자산 대비)
신한 쿼드 헬스케어랩 (목표전환형)	5,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 성과수수료(성과수수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선취 1%+ 성과수수료(고객과 합의)
씨앗 자문형랩	5,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선취형: 선취 1.0%(납입금액 대비)+ 후취 연 1.6%(전체 자산 대비) 후취형: 후취 연 1.9%(전체 자산 대비)
신한 한화 고배당랩	5,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선취형: 선취 1.0%(납입금액 대비)+ 후취 연 1.6%(전체 자산 대비) 후취형: 후취 연 1.9%(전체 자산 대비)
신한 현대인베스트먼트랩 (목표전환형)	5,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 성과수수료(성과수수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선취 1%+ 성과수수료(고객과 합의)
신한 현대인베스트먼트랩	5,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선취형: 선취 1.0%(납입금액 대비)+ 후취 연 1.6%(전체 자산 대비) 후취형: 후취 연 1.9%(전체 자산 대비)
신한 국내주식랩(유경PSG, 목표전환형)	5,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 성과수수료(성과수수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선취 1%+ 성과수수료(고객과 합의)
신한 국내주식랩(삼성엑티 브)	5,0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후취형: 후취 연 1.9%(전체 자산 대비)
신한 국내주식랩(황소)	5,0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후취형: 후취 연 2.0%(전체 자산 대비)
신한 스마트볼랩(에드, 목표 전환형)_SK하이닉스	5,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 성과수수료(성과수수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선취 1%+ 성과수수료(고객과 합의)
신한 국내주식랩(유니스토 리, 목표전환형)	5,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 성과수수료(성과수수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선취 1%+ 성과수수료(고객과 합의)
신한 국내주식랩(비전, 목표 전환형)	5,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 성과수수료(성과수수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선취 1%+ 성과수수료(고객과 합의)
신한 국내주식랩(유경PSG)	5,0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후취형: 후취 연 2.0%(전체 자산 대비)
신한 국내주식랩(유경PSG, 성과형)	5,0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 성과수수료(성과수수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후취 연 1.8%(전체 자산 대비) + 성과수수료(고객과 합의)
신한 스마트볼랩(에드, 목표 전환형)_삼성전자	5,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 성과수수료(성과수수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선취 1%+ 성과수수료(고객과 합의)
신한 국내주식랩(보고, 성과 형)	5,0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 성과수수료(성과수수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전체 자산 대비 1.0% + 성과수수료(고객과 합의)
신한 국내주식랩(보고, 목표 전환형)	5,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 성과수수료(성과수수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선취 1%+ 성과수수료(고객과 합의)
신한 국내주식랩(KCGI)	5,0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후취형: 후취 연 2.0%(전체 자산 대비)
신한 국내주식랩(KCGI, 목 표전환형)	5,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 성과수수료(성과수수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선취 1%+ 성과수수료(고객과 합의)
신한 국내주식랩(유니스토 리, 성과형)	5,0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 성과수수료(성과수수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후취 연 1.8%(전체 자산 대비) + 성과수수료(고객과 합의)
신한 국내주식랩(라이프)	5,0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후취형: 후취 연 2.0%(전체 자산 대비)

	신한 국내주식랩(라이프, 성과형)	5,0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 성과수수료(성과수수료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후취 연 1.8%(전체 자산 대비) + 성과수수료(고객과 합의)
	신한 국내주식랩(라이프, 목표전환형)	5,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 성과수수료(성과수수료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선취 1%+ 성과수수료(고객과 합의)
해외 자문형	신한명품 중국본토 자문형랩	3,0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A형: 전체 자산 대비 1.9% B형: 전체 자산 대비 2.5%
	신한명품 조인에셋 중국 자문형랩[A형]	5,0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2.5%
	조인에셋 뉴웨이브 중국 자문형랩	5,0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전체자산대비 2.5%
	CMS X 쿼터백 차이나 미래성장랩	30,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선취형: 선취 1.5%(납입금액 대비)+ 후취 연 1.0%(전체 자산 대비) 후취형: 후취 연 2.0%(전체 자산 대비)
	신한 중국주식랩(CMS X 쿼터백)	1,0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후취형: 후취 연 2.0%(전체 자산 대비)
	신한 쿼터백 글로벌 로보랩	1,0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연 2.0%
	쿼터백 미국 트렌드랩	3,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선취형: 선취 1.0%(납입금액 대비)+ 후취 연 1.0%(전체 자산 대비) 후취형: 후취 연 1.6%(전체 자산 대비)
	플레인바닐라 미국 온오프랩	3,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선취형: 선취 1.0%(납입금액 대비)+ 후취 연 1.2%(전체 자산 대비) 후취형: 후취 연 1.8%(전체 자산 대비)
	미래에셋 글로벌 혁신성장랩	3,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선취형: 선취 1.0%(납입금액 대비)+ 후취 연 1.2%(전체 자산 대비) 후취형: 후취 연 1.8%(전체 자산 대비)
	신한 해외주식랩(미래에셋, 목표전환형)	5,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납입금액대비 1.0%
			성과수수료 (성과 수수료 확정 즉시)	성과수수료 (고객과 합의)
	신한 해외주식랩(NH아문디, 목표전환형)	5,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납입금액대비 1.0%
			성과수수료 (성과 수수료 확정 즉시)	성과수수료 (고객과 합의)
	카디안 미국 자문형랩	5,0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연 2.5%
	피델리티 미국 테크 자문형랩	3,0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연 2.5%
	신한 미국테크랩 (피델리티, 목표전환형)	5,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납입금액 대비 1.0%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연 0.75%
	토러스 메스타 액티브 성장주랩	5,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A형: 선취 1.0%(납입금액 대비)+ 후취 연 1.5%(전체 자산 대비) B형: 후취 연 2.2%(전체 자산 대비)
	토러스 메스타 액티브	3,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납입금액대비 1.0%

	성장주랩 (목표전환형)		성과수수료 (성과 수수료 확정 즉시)	성과수수료 (고객과 합의)	
	신한 해외주식랩(체슬리, 목표전환형)	5,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납입금액대비 1.0%	
			성과수수료 (성과 수수료 확정 즉시)	성과수수료 (고객과 합의)	
	신한 해외주식랩(체슬리)	5,0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후취 연 2.2%	
	신한 해외주식랩(체슬리, 성과형)	5,0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성과수수료(성과 수수료 확정 즉시)	후취 연 1.5% 성과수수료 (고객과 합의)	
	신한 EPI 글로벌 채권ETF랩 (판매종료)	3,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납입금액 대비 1.0%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연 0.8%	
해외 투자형	신한 인도네시아 적립식랩 (판매종료)	5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2.0%	
	신한 글로벌 리서치랩(A형) (판매종료)	5,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납입금액 대비 1.0%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1.4%	
	신한 글로벌 리서치랩(B형) (판매종료)	5,0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1.8%	
	신한 글로벌 탐픽스랩	5,0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1.8%	
	SHarp 글로벌 EMP랩 (판매종료)	3,0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주 식 형 : 전체 자산 대비 연 1.4% 자산배분형 : 전체 자산 대비 연 1.4% 인 컴 형 : 전체 자산 대비 연 1.4%	
	신한 영앤리치 증여랩 (판매종료)	2,0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3년 이하 : 전체 자산 대비 연 1.2% 5년 이하 : 전체 자산 대비 연 1.0% 5년 초과 : 전체 자산 대비 연 0.8%	
	글로벌테마 로테이션 ETF랩 (판매종료)	3,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선취형 : 선취 1.0%(납입금액 대비)+ 후취 연 0.5%(전체 자산 대비) 후취형 : 후취 연 1.3%(전체 자산 대비)	
자산 배분형	신한명품 오페라 랩2.0 G1 (판매종료)	5,0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연 0.8% (펀드 보수 별도)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성과보수 : 없음
	신한명품 오페라 맞춤형랩 (판매종료)	5억	협 의	협 의	
		신한 OCIO 랩 (공격투자형/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안정추구형) (판매종료)	50억	협 의	협 의
지점형	신한명품 프로 ETF랩 2.0 (일반형) (판매종료)	3,000만	연간 선취 (매년)	납입금액 대비 1.0%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1.4%	
		신한명품 마이스터랩	3억	연간 선취 (매년)	납입금액 대비 1.0%

	(판매종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1.0%
			성과수수료 (성과수수료가 발생하는 날 이후 도래하는 후취수수료임)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신한명품 프로 주식랩	3,000만	A형 : 연간 후취	전체 자산 대비 24% (1,4,7,10월 첫 영업일)
			B형 (선취+ 후취)	연간 선취(매년): 납입금액 대비 1.0%
				연간 후취 : 전체 자산 대비 1.4% (1,4,7,10월 첫 영업일)
			C형 (후취+성과)	연간 후취 : 전체 자산 대비 2.0% (1,4,7,10월 첫 영업일)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D형 (선취+후취+성과)	연간 선취(매년): 납입금액 대비 1.0%
				연간 후취 : 전체 자산 대비 1.0% (1,4,7,10월 첫 영업일)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E형 (선취+후취+성과)(판매종료)	연간 선취(매년): 납입금액 대비 1.5%
				연간 후취 : 전체 자산 대비 1.5% (1,4,7,10월 첫 영업일)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F형 (선취+성과)(판매종료)	연간 선취(매년): 납입금액 대비 2.0%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G형 (후취+성과)	연간후취 : 전체 자산 대비 1.0% (1,4,7,10월 첫 영업일)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H형 (성과)(판매종료)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I형 (성과)(판매종료)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신한 해외 프로 주식랩	1,000만	B형 (선취+후취)(판매종료)	-선취(최초 1회): 납입금액 대비 1.0% -연간 후취 : 전체 자산 대비 1.6% (1,4,7,10월 첫 영업일)
			C형 (후취+성과)(판매종료)	-연간 후취 : 전체 자산 대비 1.6% (1,4,7,10월 첫 영업일)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D형 (선취+후취+성과)(판매종료)	-선취(최초 1회): 납입금액 대비 1.0% -연간 후취 : 전체 자산 대비 1.0% (1,4,7,10월 첫 영업일)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프로PB랩	3,000만	올인원형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상품별 수수료 차등 부과)	편입자산 대비 연간 후취 ◇ 국내/해외 주식 및 ETF: 연 2.0% ◇ (외국)집합투자증권: 랩수수료 없음 (고유보수 수취) ◇ ELS(DLS(B)): 랩수수료 없음(고유보수 수취) ◇ 국내 장내채권: 연 0.3% ◇ 유동성(MMW, RP): 연 0.05%
		500만	탐사치형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연 1.5% + 성과수수료 (고객과 합의)
		3,000만	마스터 성과형 (판매종료)	성과형: 성과수수료 (고객과 합의)
			마스터 후취형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연 2.4%
			마스터 혼합형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성과수수료 (성과수수료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전체 자산 대비 연 2.0% + 성과수수료 (고객과 합의)
		20억	프레스티지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연간 후취: 전체 자산 대비 연 1.0%
		50억	프레스티지(맞춤형) 협의	협 의
	프리미어 프로PB랩	1,000만	선취(최초1회): 납입 시 연간 후취 (1,4,7,10월 첫영업일) 성과수수료 (성과수수료가 확정되는 즉시 징수)	(각 수수료별 정해진 범위 내) 고객과 협의
그 외	신한 맞춤형랩	협 의	협 의	자산군별로 차등 적용
	신한미국포커스랩(맞춤형)	협 의	협 의	자산군별로 차등 적용
	名品 MMW	1만원	매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개인 0.1%/ 법인 0.05%
연 금 저축형	신한 개인연금랩(판매종료)	50만원	-	없 음 (편입자산별 판매수수료 별도)

1-1. 온라인 서비스별 수수료 및 최소가입금액

유형	서비스명	최소가입금액(원)	수수료징수일	수수료(예탁자산 일 평균잔액 기준)
국내 주식형	신한 분할매수형 e랩	1,000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0.8% (가입 후 1년 경과시 수수료 받지 않음)
	신한 토러스 자문형 e랩	3,000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1.5%
	신한 VIP 자문형 e랩	5,000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1.5%
	삼성 책임투자ESG 자문형 e랩	1,000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1.5%
	신한명품 분할매수형(국내) e랩	1,000만	선취(최초1회)	납입금액 대비 1.2%
	신한 탑픽스 e랩	3,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선취: 납입금액 대비 1.2% + 후취: 전체 자산 대비 0.9%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1.5%
	퀵드 헬스케어 자문형 e랩	5,000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1.5%
	체슬리 자문형 e랩	3,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선취: 납입금액 대비 1.0% + 후취: 전체 자산 대비 1.0%
	씨스퀘어 자문형 e랩	3,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선취: 납입금액 대비 1.0% + 후취: 전체 자산 대비 1.0%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1.7%
글로벌 주식형	신한 쿼터백 글로벌 로보 e랩 _미국상장	1,000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1.2%
	쿼터백 미국 트렌드랩	3,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선취형: 선취 1.0%(납입 금액 대비)+ 후취 연 0.8%(전체 자산 대비) 후취형: 후취 연 1.4%(전체 자산 대비)
	플레인바닐라 미국 온앤오프 e랩	3,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선취형: 선취 1.0%(납입금액 대비)+ 후취 연 1.0%(전체 자산 대비) 후취형: 후취 연 1.6%(전체 자산 대비)
	미래에셋 글로벌 혁신성장 e랩	3,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선취형: 선취 1.0%(납입금액 대비)+ 후취 연 1.0%(전체 자산 대비) 후취형: 후취 연 1.6%(전체 자산 대비)
	신한명품 중국본토 자문형 e랩	3,000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1.8%
	조인에셋 뉴웨이브 중국 자문형 e랩	5,000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1.8%
	카디안 미국 자문형 e랩	5,000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1.8%
	피델리티 미국테크 자문형 e랩	3,000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1.8%
	토러스 메스타 액티브 성장주 e랩	5,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A형: 선취 1.0%(납입금액 대비)+ 후취 연 1.2%(전체 자산 대비) B형: 후취 연 1.9%(전체 자산 대비)
	신한 글로벌 탑픽스 e랩	5,000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1.5%

	신한 해외주식랩(체슬리)	5,0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후취 연 2.2%
	신한 해외주식랩(체슬리,성과형)	5,0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성과수수료(성과 수수료 확정 즉시)	후취 연 1.5% 성과수수료 (고객과 합의)
	신한 중국주식랩(CMS X 쿼터백)	1,0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후취형: 후취 연 2.0%(전체 자산 대비)
자산 배분형	신한 미래설계 적립식 e랩 (판매종료)	50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1.2%
	신한 프리미어 SOL메이트랩(인컴형)	3,000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전체 자산 대비 연 1.2%
	신한 프리미어 미래설계랩	3,000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자산배분형_국내: 전체 자산 대비 연 1.8% 자산배분형_해외: 전체 자산 대비 연 1.8% 액티브테마형: 전체 자산 대비 연 1.8%
해외 투자형	SHarp 글로벌 EMP e랩 (판매종료)	1,000만	연간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주 식 형: 전체 자산 대비 연 1.2% 자산배분형: 전체 자산 대비 연 1.2% 인 컴 형: 전체 자산 대비 연 1.2%
	글로벌테마 로테이션 ETF e랩 (판매종료)	3,000만	선취(최초 가입시 1회) 연간 후취(1,4,7,10월 첫 영업일)	선취형: 선취 1.0%(납입금액 대비)+ 후취 연 0.4%(전체 자산 대비) 후취형: 후취 연 1.2%(전체 자산 대비)
지점형	프리미어 프로PB e랩	1,000만	선취(최초1회): 납입 시 연간 후취 (1,4,7,10월 첫영업일) 성과수수료 (성과수수가 확정되는 즉시 장수)	각 수수료별 정해진 범위 내 고객과 협의

<별지 2>**1. 수수료 세부내용****가. 일임운용수수료**

- 연율 기준 수수료로 받는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① 선취 : 평가금액 또는 납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받으며, 중도해지 및 출금 시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

② 후취 : 일별 투자일임자산 평가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대로 일할 계산하여 약정한 시점 또는 계약 해지시에 받음(예탁자산 일 평균잔액 기준)

단, 가입 후 일정기간 수수료를 받은 후, 해당 서비스의 운용방식에 따라 특정시점부터 할인하거나 받지 않을 수 있음.

나. 중도해지수수료 : 선취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에 대해 중도해지 및 출금 시 적용

위 2의 가. ①의 각 선취수수료 환급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에 따라 받음

단, 위 1의 서비스별수수료에서 별도로 중도해지수수료를 정하는 서비스의 경우 아래 표를 따르지 않음

중도해지 또는 출금 시기	중도해지수수료
매 선취수수료 받은날로부터 1개월내	각 선취수수료 환급금액의 80%
매 선취수수료 받은날로부터 2개월내	각 선취수수료 환급금액의 70%
매 선취수수료 받은날로부터 3개월내	각 선취수수료 환급금액의 60%
매 선취수수료 받은날로부터 6개월내	각 선취수수료 환급금액의 40%
매 선취수수료 받은날로부터 9개월내	각 선취수수료 환급금액의 30%
매 선취수수료 받은날로부터 9개월 이후	없음

다. 성과수수료

- 성과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합니다.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의 합의에 의해 기준수익률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수익에 서비스별 성과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받습니다. 성과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① 성과수수료 계산기간

[1년 단위로 정기징수 : 서비스등록일 또는 성과수수료 징수일로부터 매 1년간으로 합니다.]

[정기징수 외 이벤트 발생시 : 서비스등록일 또는 운용개시일로부터 해지일자 전일까지로 합니다.]

단, 추가입금, 출금 및 중도해지의 경우 신청 전일까지 기간으로 한정하여 받습니다.

(계산기간 사례)

서비스등록일	이벤트	확정일자	구분	계산기간
		2021.01.01	가입	
이벤트발생	정기평가	2022.01.01	성과수수료 확정	1차 기간: 2021.01.01~2021.12.31 (가입일로부터 1년)
이벤트발생	추가입금	2022.03.01	성과수수료 확정	2차 기간: 2022.01.01~2022.02.28 (입금 전일까지)
이벤트발생	일부출금	2022.06.01	성과수수료 확정	3차 기간: 2022.03.01~2022.05.31 (출금 전일까지)
이벤트발생	청산해지	2022.09.01	성과수수료 확정	4차 기간: 2022.06.01~2022.08.31 (해지 전일까지)

- 계산된 성과수수료 확정 시 하이워터마크가 적용되며 원금(조정원금) 대비 초과된 수익에 대해서만 성과수수료가 징수됩니다.
- * 하이워터마크 : 기 발생한 성과수수료로 인해 원금이 조정된 경우 가장 높았던 성과를 조정원금으로 하고, 이를 초과한 고객수익금에 대해서만 성과수수료 징수
- ② 성과수수료 확정시기 : 정기징수(계약일 기준 매1년), 입출금 발생일, 해지 신청시 성과수수료 금액이 확정됩니다.
- ③ 성과수수료 계산 방법 : 자본시장법 제98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가 정한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 확정 이벤트발생 시에 한하여, 고객과 합의된 조건을 토대로 각 상품별 성과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④ 성과수수료 징수시기 : 성과수수료가 확정된 날 즉시 성과수수료가 고객 계좌에서 징수됩니다. 단, 징수일 기준 랩서비스 내 현금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분할징수 될 수 있고 그 경우 징수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⑤ 운용성과율이 기준수익률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낼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합니다.
- ⑥ 신한 OCIO 랩의 경우 성과수수료 계산기간, 징수시기, 지급시기 등 세부 요건은 별도 합의에 의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 * 이미 받은 성과수수료는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중도해지의 사유가 법규 위반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고객은 성과수수료(지급하지 않은 금액 포함)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종합자산관리 계좌 증권별 평가기준

(1) 주식

- 1) 원칙: 시가평가(전일 종가). 다만 전일 종가가 없는 경우 최근일 종가
- 2) 유상증자
 - ☞ 권리락: 청약가능 주식수를 시가평가

☞ 청약 시

- 청약 전(기준일 전일부터 청약종료일까지): (기준일(D-2) - 발행가액) * 배정수량
- 청약 후(청약종료일 익일부터 신주상장전일까지): 당일종가 * 배정수량
- 신주인수권 상장의 경우(거래 기간 동안): 신주인수권 당일 종가*보유 수량

☞ 입고 시: 입고 주수를 시가평가

☞ 청약취소: 청약 주수를 빼고 시가평가

3) 무상증자

☞ 권리락시: 기입고 된 주식수를 시가평가

☞ 입고 시: 입고 주식수를 시가평가

4) 배당

☞ 배당락 시: 이론배당락평가액을 가입금 처리하고 배당금(주) 입금(고)시 가입금액 빼고 시가평가

5) 주식매수청구

☞ 주식매수청구시 주수×청구가격을 가입금 처리하고 주권은 평가에서 제외

6) 신주인수권

☞ 신주인수권 청약 시 신주인수권의 가배정수량을 시가평가

(2) 채권

1) 일반채권(국공채, 금융채, 특수채, 회사채 등)

☞ 상장채권: 시가평가

☞ 비상장채권: 액면가평가

2) 신주인수권부사채

☞ 신주인수권은 가배정수량을 시가평가하고 사채는 시가평가

3) 교환사채

☞ 상장교환사채는 시가평가 하며, 교환사채 출고 시 교환주의 배정수량을 시가평가한다.

4) 전환사채

☞ 상장전환사채는 시가평가 하며, 전환사채 출고 시 전환주의 배정수량을 시가평가한다.

5) 랩 전용 RP

☞ 증권사가 고객에게 선매도한 경우: 계약이율

☞ 증권사가 고객에게 선매수한 경우: 계약이율

(3) 펀드

1) 수익증권 : 당일적용 기준가

2) 뮤추얼펀드 : 당일적용 NAV

(4) 예수금

- 예수금 잔고

3. 참고 사항

가. 신탁보수(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는 별도로 받음

나. 주식 및 파생상품 매매 관련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 다. 서비스에 대한 중도해지수수료 외에, 가입 펀드 약관에 따라 중도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라. 해외증권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에게 별도로 받으며, 그 비용에는 현지 증권사 중개 비용 (Broker Fee등), 유관기관수수료(SEC, ECN Fee등), ADR보관 수수료, 각종 세금(인지세 등) 등이 있음.
- 마. (외국)집합투자증권 포함 시에는 환매일자에 따라 계약해지일자가 현행 T+5일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바.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연체수수료는 없음.

<별첨>

1. 제12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연체이자 = $\frac{\text{예탁금이용료} \times \text{연6\%}}{365}$
 - 예탁금이용료 = 인터넷홈페이지
- (www.shinhansec.com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 > 예탁금이용료)에 고시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